

2 순회교사제

가. 용어의 정의

- 1) 순회·겸임교사
 - 특정 학교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을 두고 2개교 이상의 학교를 순회 또는 겸임하여 담당교과목을 지도하거나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
- 2) 소속학교(기관)
 - 임용권자가 지정한 순회(겸임)교사가 소속된 학교(기관)
- 3) 순회·겸임학교
 - 순회교사가 순회 또는 겸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학교(기관)외의 학교
- 4) 표시과목불일치 교사
 - 교원자격증의 「표시과목」(전공과목)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

나. 목적

- 1) 학교 간, 교과 간 교원의 수업시수 격차 완화
 - 가) 전 교과목 교원 배치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중등학교 등의 교원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및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
 - 나) 교사별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로 교원 간 불만해소 및 수업의 질 향상
- 2) 표시과목불일치 교사 해소 및 학생의 교과목 선택기회 확대
 - 가) 표시과목불일치 교사들을 최우선적으로 순회교사로 활용함으로써 상치교사 해소
 - 나) 제2외국어 및 학생들이 선택한 다양한 교과를 그 과목을 전공한 교사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3) 소외 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 및 교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
 - 가)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학생에게 전공교사로부터의 학습·상담 및 교육복지 기회 확대 제공
 - 나) 해당교과 교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
- 4) '2015 개정 교육과정', '2022 개정 교육과정'의 운영을 위한 지원
 - 가)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과 선택 지원
 - 나) 단위 학교 여건에 맞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자율권 확보

다. 역할 및 임무

- 1) 특정학교에 소속을 두는 순회교사
 - 특정 학교에 소속(소속학교)을 두고 2개교 이상의 학교를 순회 또는 겸임하여 학생을 교육하거나 학교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